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하향 〉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19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하향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1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7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9.
- (3) 회 부 일 : 2024. 1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하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앞당기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u>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u>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u><신설></u>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 ----- ----- <u>60세가</u>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u>1. 특수직종근로자</u> <u>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u>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u>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u>)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 ----- ----- <u>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u> ----- -----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에는 65세(<u>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u>)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u>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u>)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때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③·④ (생략)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u>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u>)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 5. (생략)	-----<u>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u>----- -----. ② ----- -----<u>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u>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u>-----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0세이지만,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 또는 어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특수직종근로자¹⁾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다른 일반 가입자보다 5년 더 빠른 55세임.²⁾³⁾

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각 목 생략)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2)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이는 갱내 작업에 종사(광업)하거나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어업)하는 직종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 및 조기 은퇴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부터 적용되었음.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려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2022년에 사망한 중증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연령은 74.1세로, 같은 기간 사망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사망 시 평균연령(76.7세)과 비교하였을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보다 약 2~3년 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및 장애인의 연령별 조사망률을 비교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포함된 60대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 조사망률 대비 약 6.1배 더 높은바,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앞당겨지면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수급권자 간의 평균수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

3) 참고로, 국민연금 제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1998년 연금개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은 최대 65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60세)까지 늦추어지고 있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2년 이전	'53년부터 '56년까지	'57년부터 '60년까지	'61년부터 '64년까지	'65년부터 '68년까지	'69년 이후
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4)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기대수명'은 그 해 출생자(0세)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사망 시 평균연령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금 기대 수익비의 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7세⁵⁾이나,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년 앞선 65세부터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및 장애인 중증도별·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 >

(단위: 세)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전체 인구	76.7	14.9	73.1	14.7	80.8	14.0
장애인	77.9	12.6	75.3	12.7	81.2	11.9
【 장애 중증도 】						
중증(구 1-3급)	74.1	14.0	72.0	13.6	77.0	13.9
경증(구 4-6급)	81.0	10.5	78.2	10.9	84.2	8.9
【 장애 유형 】						
지체	78.9	11.2	75.0	11.6	83.1	9.1
뇌병변	75.4	13.0	73.2	12.8	78.1	12.8
시각	80.5	10.9	77.9	11.2	83.9	9.5
청각	85.3	7.9	83.6	8.0	87.3	7.3
언어	73.6	12.4	72.6	12.2	76.8	12.6
지적	57.9	16.5	56.9	16.2	59.7	16.9
자폐성	22.5	11.8	23.1	10.9	19.8	16.2
정신	63.7	11.1	62.9	10.6	64.7	11.7
신장	71.8	11.5	70.9	11.2	73.2	11.8
심장	71.9	14.3	71.7	12.9	72.3	17.2
호흡기	72.2	10.0	72.9	9.4	69.4	11.6
간	61.0	12.2	61.3	11.0	60.2	15.7
안면	74.0	11.4	71.8	10.9	77.3	11.7
장루·요루	75.5	12.5	74.5	11.9	77.2	13.5
뇌전증	57.9	16.5	57.7	15.8	58.3	18.0

주: 전체 인구의 사망 시 평균연령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연령미상(18명)을 제외하고, 사망 시 연령이 100세 이상인 경우는 '100세'로 간주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5) 2004년 연금개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독일 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2023, 16면.)

6) 독일 사회법전 제6권(Sozialgesetzbuch VI) 제37조.
(자료: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및 장애인 연령별 조사망률¹⁾(2022) >

(단위: 명, 10만명당)

구분	전 체		장 애 인			중증장애인 ²⁾		
	사망자	조사망률 (A)	사망자	조사망률 (B)	배율 (B/A)	사망자	조사망률 (C)	배율 (C/A)
0-9세	949	25.9	117	356.7	13.8	114	430.9	16.6
10-19세	796	16.9	177	292.2	17.3	165	309.4	18.3
20-29세	2,757	42.3	358	370.6	8.8	320	405.6	9.6
30-39세	4,427	66.7	565	493.0	7.4	451	612.9	9.2
40-49세	11,539	143.1	1,786	789.8	5.5	1,315	1,245.0	8.7
50-59세	26,341	308.1	5,505	1,309.8	4.3	3,702	2,177.4	7.1
60-69세	48,998	677.6	13,706	2,192.0	3.2	8,515	4,104.7	6.1
70-79세	76,621	3,318.7	24,547	4,260.7	1.3	12,424	8,014.7	2.4
80세 이상	200,493	9,237.2	56,155	11,312.4	1.2	19,253	16,884.3	1.8

주 1) 조사망률(Crude Death Rate)은 특정연도 사망자 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한 해의 법정 상주인구를 6월 30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정 한 인구)로 나눈 수치임.

2)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구(舊) 1-3급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그런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장애 유형별’로 사망 시 평균연령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22.5세), 지적장애 및 뇌전증(57.9세), 정신장애(63.7세) 등 일부 유형의 사망 시 평균연령이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하여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사망 시 평균연령이 특히 낮은 유형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개정안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최혜영의원(의안번호 제2104443호)과 우원식의원(의안번호 제2124886호)이 각각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55세로 하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 중 우원식의원안은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특히 더 짧은 점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수급개시연령을 50세까지 하향하려는 내용이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노령연금⁷⁾의 수급개시연령을 개정안과 같이 5년 앞당기게 되면 중증장애인의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급여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증장애인이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에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고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

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각 호 생략)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행법 제13조제1항⁸⁾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최혜영의원(의안번호 제2104443호)과 우원식의원(의안번호 제2124886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면서, 이 경우 장애인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함께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음.

□ 셋째, 「국민연금법」에 따른 4종 급여⁹⁾ 중 ‘장애연금’은 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8)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9)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10)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장애연금 수급자(75,480명) 중 절반 이상인 41,025명이 60세 미만임.

<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수급자	75,480	271	2,671	11,197	26,886	21,967	10,164	2,324

주: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수급자 현황으로, 같은 기간 중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된 현황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 참고로, 소득이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이르게 되면 ‘중복급여 조정제도’에 따라 어느 한 종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데,¹¹⁾

2024년 10월 현재까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지게 된 수급권자(25,826명) 중 약 75.7%(19,554명)가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하였음.

< 노령연금-장애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제도 선택 현황 >

(단위: 명)

구분	(선택) 노령연금 (미선택) 장애연금	(선택) 장애연금 (미선택) 노령연금	합계
수급자	19,554	6,272	25,826

주: 2024년 10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11)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가입자인 국민 전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으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 밖의 장애인 지원제도(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임.

* 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기대수명은 약 78.6세 수준임.

문 의 처
02)6788-5510